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0호, 2021.10.14.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7조의2 신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지정서의 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 제11조제1항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중 “이용·보급”을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18조의2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 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 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이용·보급”을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마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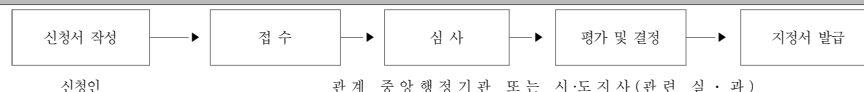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기관명:
- 대표자:
- 주 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 [백상지(150g/㎡)]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기관	기관 또는 단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시범사업 명칭		
시범대상사업 개 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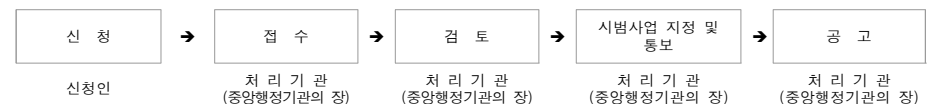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붙임 서류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u> <u>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u>